#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11 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신성범·김도읍·김선교

김승수 · 김예지 · 김종양

김태호 • 민홍철 • 박대출

박덕흠 • 박정하 • 서일준

서천호 • 이성권 • 이양수

이종욱 • 장동혁 • 주호영

차규근 • 천하람 • 최보윤

최수진 • 최형두 • 한정애

의원(24인)

## 제안이유

6·25전쟁 기간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, 함양군휴천면·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양민을 희생시켰는바, 이를 각각 거창사건, 산청·함양사건(이하 "거창사건등"이라 함)이라 함.

1996년 「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, 1998년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934명의 사망자와 1,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음.

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나,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,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.

이에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 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 치법」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거창사건등의 발생 시기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, 거창사건등과 관 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 련자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관련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과 그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 자명예회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를 두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 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함)를 두도록 함(안 제4조).
- 라.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관련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지

- 연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(안 제9조).
- 마. 국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(안 제10조).
- 바.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
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,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거창사건등"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, 함양군 휴천면·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.
- 2. "관련자"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창사

건등의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- 3. "유족"이란 관련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.
- 제3조(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 및 유족을 결정하고,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
  - 2.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  - 3.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
  - 4.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
  - 5.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대한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
  - 6. 제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
  - 7. 관련자 추모사업 또는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  - 8.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유족대표 5인 이내,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

위촉한다.
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 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 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  - 1. 관련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
  - 2. 보상금등의 신청접수와 집행 등에 관한 사항
  - 3.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-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.
- 제5조(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)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(職)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6조(불이익 처우 금지) 관련자 및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.
- 제7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) ①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의 손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,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8조(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) ① 위원회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

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자 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보상금) ①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관련자의 일실이익과 장 기간의 보상지연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  - 1.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1억4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
  - 2.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1억4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. 다만,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 상이를 입은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.
  - ③ 그 밖에 보상금의 금액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의료지원금) ① 국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(單割引法)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.
  -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생활지원금) ①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기탁 받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보상금등의 지급신청) ① 위원회는 해당 시·군 등에 보상금·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(이하 "보상금등"이라 한다)을 신청·접수할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에따른 피해신고 신고처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실무위원회에 보상

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의 신청은 이 법 시행일(법률 제0000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)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심의 및 결정)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 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결정서 송달)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5조(재심의) ① 위원회가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제1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3조 중 "120일"은 "60일"로 본다.
- 제16조(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)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 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

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- 제18조(조세 면제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제19조(결정전치주의)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(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)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.
  - ②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「국가배상법」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제21조(시효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제22조(보상금등의 환수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  - 1.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
  - 2.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
  - 3.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관련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
  - 4. 관련자가 거창사건등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
  -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제23조(사실조사 및 협조의무)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

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, 보상금등의 지급,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등을 위하여 관련자,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,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4조(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) ① 위원회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추모사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추모를 위한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26조(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) 누구든지 관련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7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, 제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제2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
  - 2.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
  - ② 제2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③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

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4조(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및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각각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본다.
- 제5조(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

행일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